전재성

I. 연구의 목적

- o 근대주권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대별, 각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식, 국가전략 프로그램 등을 개념사로 이해
- 핵심은 "주권" 개념이지만, 주권을 이루는 실체 요소로서 "자주"의 개념을 연구
- 인접 개념으로는 "독립" "자조" "자립" "자존" 등이 사용
- 시대별로 국내외의 환경이 바뀌게 됨에 따라 주권국가의 기본 요건이 변화하고 자주의 개념 도 변화하는 양상
- o 이론적으로는 법적 주권과 경험적 주권 간의 관계를 추적
- Robert Jackㄴon의 Juridical sovereignty와 empirical sovereignty, Krasner의 legal sovereignty와 Westphalian sovereignty 간의 관계
- 한국이 19세기 중반부터 만국공법에서 보장되는 법적 주권과 사실상의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국력을 안팎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험적 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추구했는지를 논의
- 이러한 과업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주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각 시대별 국제 정치의 조직원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 주권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므로 많은 사실상의 변이를 담을 수 있고,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 동아시아에서 주권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구체적으로 추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
- o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근대 국가를 시작했고, 법적 주권의 양분, 갈등과 경험적 주권의 발전 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
- 냉전기 주권의 핵심이 되는 자주의 개념을 남과 북이 동시에 사용. 개별적 법적 주권을 다지기 위한 대외 독립의 자주, 남과 북 서로에 대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분단 속의 법적인 의미의 자주, 주변국으로부터 실제적 힘을 보장받기 위한 경험적 자주, 남북 대립 속의 자주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대인 1960년대와 1970년에의 남북 자주개념 연구로 한정. 선행 연구는 김성배 박사의 "북한의 자주개념사 연구"; 김원식, "자주성의 역설에 대한 성찰: 주 체철학의 자주성 개념과 근대적 자유"등.

	대외적	남북 간
법적 자주	한반도 주도권 경쟁, 외교경쟁	통일의 주체로서 경쟁, 통일 방안 경쟁
경험적 자주	주변국으로부터 실제적 자주 확보, 한국의 경우 동맹과 자주 국방, 북한의 경우 자주 외교 노선	국방, 경제, 사상, 사회문화 분야에서 힘의 경쟁

Ⅱ. 냉전 이전

- o 전통 시대에는 자주의 개념의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반면, 고종 당시 근대 이행기 자주의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함
- 근대적 조약 개념, 만국공법 도입, 부국강병의 필요성 등 근대 이행기 개념적 전파 속에서 주권의 개념을 이루는 다양한 범주들을 둘러싸고 고민이 시작.
- 이행기 자주 개념으로부터 전통시대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노력도 시작. 유길준의 서유견문 의 사례.
- 단순히 대외적 자주 뿐 아니라 실제적 자주 국가가 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짐. 경제, 사회문화, 의식 분야의 자주 개념 사용.
- o 식민지 시대 자주 개념도 연구할 필요
- 그러나 압도적으로 독립 개념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자주독립의 개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음.
- 주권 국가 구성에 대한 개념이 훨씬 다양화되면서 자주 개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
- = 조선왕조실록, 총 24편의 기사: 세종 (1), 정조 (1), 고종 (22)
- = 1879, 영선사 김윤식, 텐진에서 청의 리홍장(李總章) 미국과의 조약문제를 논의. 이홍장은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방이었으나 외교와 내치는 自主"라는 1개조를 조약에 삽입하자고 제의.

김윤식은: "폐방(조선)은 중국에 대해서는 속국이지만 각국에 대하여는 자주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리에 맞아 실제와 이치 양쪽 모두 편리 [兩便]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영효, 개화에 대한 상소:

지금 세계의 형세는 오히려 옛날의 戰國時代와 같다. 한결같이 兵勢로 雌雄을 겨루어 강자는 약자를 아우르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倂呑한다. … 비록 萬國公法이나 均勢와 公義가 있다 하나 나라가 스스로 自立自存하는 힘이 없으면 반드시 분할되어 유지할 수 없다. 公法과 公義라는 것은 본디 의지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歐洲의 文明大國도 敗하거늘 하물며 亞洲의 未開하고 약소한 지방이야 …

= 서유견문, 방국의 권리

국외적인 주권이다. 독립과 평등의 원리에 따라 외국과 교섭하는 일이다...한 나라의 주권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형세가 강한지 약한지, 그 나라의 시작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땅이 큰지 적은지, 국민이 많은이 적은지를 따질 것 없이 국내외 관계의 참다운 형상에 의하여 단정할 수 있다. 천하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범하지 않을 때에는 독립과 자주에 기초하여 그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법이다.

입법하는 권리는...다른 나라 사람들이 간여할 것이 아니니, 자주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넘보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금의 여러 공법의 대가들은...그 나라를 자주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주권 독립국이다...대개 국내외의 정치와 외교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외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 나라가 정당한 독립국 이다.

대개 속국은 복종하거나 섬겨야 하는 나라의 정령과 제도를 따라야 하고,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증공국은 강대국의 침략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가 대적하기 어려운 형세인 것을 스스로 헤아려 비록 본심에는 맞지 않더라도 조약을 준수하여 공물은 보내고, 그들이 누리는 권리의 한도에 따라 독립주권을 얻는다. 그러므로 증공국이 다른 여러 독립국과 같은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한다면, 세계 가운데 당당한 하나의 독립 주권국이다.

국민의 권리

그러나 국민들의 사사로운 일까지 간섭한다면, 정부가 본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국민들의 자주적인 역량을 방해하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12일 갑인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종묘에 나아가 서고를 행하고 홍범 14조를 고하다.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서고(誓告)를 행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감히 황조(皇祖)와 열성(列聖)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생각건대 짐(朕)은 어린 나이로 우리 조 종(祖宗)의 큰 왕업을 이어 지켜온 지 오늘까지 31년이 되는 동안 오직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 워하면서 우리 조종들의 제도를 그대로 지켜 간고한 형편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그 남긴 위업 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짐이 하늘의 마음을 잘 받든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겠습 니까? 실로 우리 조종께서 돌보아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우 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짐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하였으며 우방(友邦)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직 자주 독 립(自主獨立)을 해야 우리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이 어찌 감히 하늘의 시운을 받들어 우리 조종께서 남긴 왕업을 보전하지 않으며 어찌 감히 분발하고 가다듬어 선대의 업 적을 더욱 빛내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에 의거하지 말고 국운을 융성하게 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자주 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그 방도는 혹 시라도 낡은 습관에 얽매지 말고 안일한 버릇에 파묻히지 말며 우리 조종의 큰 계책을 공손히 따르고 세상 형편을 살펴 내정(內政)을 개혁하여 오래 쌓인 폐단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짐은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고하면서 조종이 남긴 업적 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 다."

=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9일 양력 3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권달섭 등이 황제에 즉위할 것을 주청하다.

유학(幼學) 권달섭(權達燮)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이 나라를 세운 초기에 왕업을 비로소이룩하였으며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어 상(商) 나라와 주(周) 나라처럼 천명(天命)을 다지기를 크게 하고 치밀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열성조(列聖朝)의 신무(神武)한 교화가 거듭 빛나고 누대에 걸쳐 태평을 이루어 우리 성상(聖上)이 임어(臨御)한 후에는 어진 혜택과 덕 있는 교화가 자내(字內)에 차고 넘쳤습니다. 큰 덕을 밝게 입히시니 요(堯) 순(舜)의 시대가 회복되었고 교화를 크게 펴시니 탕무(湯武)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500년간의 종사(宗社)가 다행히큰 법을 개혁하는 때를 당해서 삼천리 강토가 비로소 자주 독립의 운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경축하여 온 나라가 모두 봄을 맞이하게 되었고 억만년토록 아름다움이 무궁하여 왕업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건양(建陽)은 원래 황제의 연호인 만큼 등급이 높습니다. 대체로 신하와 백성들이 몹시 애쓰고 충심으로 간청하며 모두 바라는 것은 성상의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폐하의 요(堯) 순(舜)과 같은 정사와 문명한 덕에 대해서는 귀신과 사람들에게 증험할 수 있고, 지금 <u>자주 독립의 위치에서 조서(詔書)와 칙서(勅書)로 명령하는 것</u>과 연호를 정하는 것은 이미 황제의 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아직도 군주의 자리에 계십니다. 군주와 황제는 현재 한 세대를 놓고 볼 때 그 뜻은 같지만, 본국(本國)의 신하와 백성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제(帝)라고 칭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u>자주(自主)의 '자(自)'자(字)와 독립(獨立)의 '독(獨)'자의 뜻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혼자 마음대로 하는 데에 있지 여기에 물어 보고 저기에 의거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자주적인 우리나라는 마땅히 황제라고 불러야 하는데, 어째서 크게 보배로 운 황제의 자리에 임어하지 않으십니까?</u> 삼가 성상의 뜻을 알 수 없으나 혹시 나라의 체통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법규 교정소 총재 이하를 인견하다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제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獨立)한 제국(帝國)이다.

제2조. 대한 제국(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 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 제 정치(專制政治)이다.

- III. 냉전기 한국의 자주 개념
- o 냉전기 남과 북 모두 자주 개념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개념으로 삼아 활용.

- 법적 주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를 둘러싼 경쟁이 부분적으로 반영됨.
-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대립구도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 개념으로 자주 개념을 사용. 자주 경 제, 자주 국방, 자주 외교 등의 개념.
- 또한 남과 북 모두 외세로부터 자주 개념도 동시에 발생. 한국은 동맹과 자주의 복합을 둘러싼 고민. 북한은 사회주의 연대와 자주의 복합을 둘러싼 고민.
- 7.4 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자주를 둘러싼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특기할 현상.
- o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중반까지 자주 개념을 폭넓게 사용했지만 이후 국방에 집중해서 사용
- 초기에는 자주 경제, 자주 문화 등의 개념을 주로 사용. 자주 국방에 대한 개념을 상대적으로 적음.
-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주 국방을 강조하기 시작하다가, 1960년 대 말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 움직임, 1968년 북한의 도발 등을 겪으면서 자주의 개념 과 국방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접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함.
- = 이승만 대통령. 만민공락(萬民共樂)의 국초(國礎)를 전정(奠定), 1949.

이제 바야흐로 국권을 회복하고 신생 자주독립 민족적 민주주의국가로 탄생하여...대한민국이 자주독립,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임을 넓히 중외에 선포하였음은...

- 1940년대 자주 개념은 대외적 법적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 제5대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취임사. 1964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내일로 향하는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오 앞에 겨레의 충성스러운 공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 정신적 혁명을 전개하여야 하겠읍니다...국민은 한 개인으로부터 <u>자주적 주체의식을</u> 함양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립, 자조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이 땅에 민주와 번영, 복지사회를 건설하기에 민족적 주체성과 국민의 자발적 적극참여의 의식, 그리고 강인한 노력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아야...

- 취임사의 중요 연설에서 자주의 개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최우선 배치.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자주, 자주적 주체의식 등의 개념으로 사용. 군사와는 연결되지 않음.
- =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

새 공화국이 당면한 제일의 과제는 격동과 파란으로 연속된 혁명기의 여신을 청산하고 4·19 와 5·16의 혁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u>자주와</u> 자립과 번영을 지표로 시급 한 민생문제부 터 해결하고 의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궤를 바로잡는 일...

=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1965. 6. 23.

한일양국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점이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이 바로 독립국가로서의 <u>자주</u>정신과 주체의식이 더욱 확고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아세아에 있어서 반공의 상징적인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

- 외세, 특히 일본에 대한 대외적 자주를 강조하는 경우로 앞의 경우와는 다른 범주.
- = 1965 광복절 제20주년 경축사.

<u>자주</u>한국으로 새출발했던 『민주해방』...오늘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그렇게도 모든 것을 약속해 주던 그 해방이 아직도 <u>자주,</u> 민주, 자립의 번영된 조국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 식량증산 연찬대회 치사. 1964.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 세계의 모든 민족이나 국가는 <u>「자주」라는</u>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경제적 자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은 식량의 자급자족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 경제적 의미로서의 자주 개념, 혹은 자주 국가를 위한 핵심 개념.
- = 창립 3주년을 맞는 농협을 위한 메시지. 1964

농협의 정신인 자조·자주·봉사에 대하여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제47회(第四十七回) 3·1절(三一節) 경축사(慶祝辭), 1966.

지금 우리가 당면(當面)한 두 가지 문제(問題)는 바로 이 심각(深刻)하고 준엄(峻嚴)한 경쟁(競爭)을 이겨 내는 <u>자주적역량(自主的力量)</u>과 주체성(主體性)을 배양(培養)하여 조국(祖國)의 근 대화(近代化)를 촉진(促進)하는 문제(問題)이며...

- 자주를 일반적 역량 개념으로 사용, 그러나 군사적 의미보다는 경제발전의 의미로 사용.
- = 1968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향토예비군설립 연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휴전 하에서 가상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생각하고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눈 가리고 살아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안일과 태평에 사로잡혀서 적과의 대결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발한 것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수십만의 대군이 밤낮 없이 대치하고 있으며 또한 김일성 집단은 세게 공산당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독재 집단이요, 그 호전성으로 악명 높은 평화 교란자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루 바삐 태평과 안일의 환상을 박차고 <u>자주 국방</u>의 건설을 위해서 총궐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 이 연설은 자주 개념의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향토예비군은 1968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386호로「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1968년 4월 1일 국방 부령 제123호로「동법시행규칙」을 제정·공포. 그 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다시 1968년 5월 29일 법률 제2017호로「향토예비군설치법」을, 1968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 3482호로「동법시행령」을, 1969년 1월 8일 국방부령 제131호로 동시행규칙을 전문 개정. 북한은 1968년 휴전선 근방에서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 공격을 기도하고 잇따라 해상에서도 미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를 비롯한 한국 어선의 납치행위 등을 계속하는가 하면, 무려 300여건, 1천 여 명에 달하는 무장간첩을 남파. 당시한국은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음.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자위를 위한 중대 결의를 하고 유엔에 대해 자주국방 요구를 하게 되고 특히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에 대한 도전이기도 함.

= 1969.04.25.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

지난 4월 15일 동해 상공에서 격추당한 EC 121 미국 정찰기에 대해...일부 미국인들이나 우리 나라 국민들 가운데에 있어서도 흥분한 사람들은, 왜 미국 정부는 좀더 즉각적으로 우선 따금한 조처를 취하지 왜 이렇게 흐리멍덩하냐 하는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줄 압니다만, 지금부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북괴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태가 달라지고 또한 조치를 달라질줄 압니다만 문제는 앞으로의 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북괴에 대한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이제 거의 한계선에 도달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최근 '오끼나와'군사 기지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군사기지 그 자체만은 이것을 일본 사람들의 결정으로서, 또는 일본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결정으로서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왜냐 하면이것은 일본의 안전만을 위해서 있는 기지도 아니요, 전'아시아'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본 국민들 중에 일부 약삭빠른 일본 국민들을 '오끼나와'군사기지를 그대로 두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전쟁에 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기지를 다 없애버리고깨끗이 하면, 이 지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일본 사람은 여기에 말려 들어갈 염려도 없고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약은 수작 같지마는 오늘날 모든 정세가 그렇게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무상 원조는 조만간 끊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내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71년도에 가서는 일부 잉여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무상 원조는 끝날 것이라 하는 전제 하여 지금 2차 5개년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립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가 어느 때에 가서는 남으로부터 받는 무상 원조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도달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생각합니다...우리 한국 경제의 자립도가 1957년,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시절에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해일 것입니다. 이해에 우리 한국의 재정 자립도는 47%였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금년 69년도에 우리 나라의 재정 자립도는 92%까지 지금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괴가 6,25와 같은 그러한 전면 전쟁의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읍니다만, 김일성이가 지금 대한민국 적화에 대한 기본 전략을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세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틀림 없으리라고 나는 봅 니다. 첫째는 종전과 같이 남한에다가 간첩이나 무장공비나 게릴라 같은 것을 자꾸 침투시켜 서 치안을 교란하고 민심을 불안케 해서 한국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내부에서 스스로 와해가 되고 넘어지게끔 만들어 보자는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북괴가 이 런 짓을 하리라고 보는데, 또 한가지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과 미국 즉 한,미간에 이간 책을 써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손을 떼게하고 대한민국과 북괴와 1:1로 대결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같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 은 이번 모양으로 공해 상에서 비행기를 격추시킨 불법 사건을 저지른다든지 작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사건 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보복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보복을 받으면, 가령 청와대 사건 같은 것도, 이 청와대 사건이라는 것이 남한에 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폭동인데 공연히 자들한테 뒤집어 씌운다. 자기들은 여기에 보 낸 일이 전연 없다, 즉 이쪽에서 우리가 보복을 한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군과 유엔군이 먼저 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라고 해서 중공이나 소련을 끌어 넣어 6,25와 같은 전쟁을 하면 자기 들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괴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일 성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이 세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일성 이가 여기에 아직까지 한국군과 유엔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소련과 중공을 끌어 넣 지 않고 단독으로 전면 전쟁을 하겟느냐, 또 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러 한 능력도 없고 그런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중공이나 소련을 끌어 넣어야 되겠는데, 끌어 넣는 그러한 구실로서는 자기 들이 먼저 건드려 놓고 이쪽으로 하여금 보복을 하도록 해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유엔군 이다, 한국군이다, 하는 술책을 쓰리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은인 자중하고 자제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참아 왔다는 것을, 적의 이러한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미 7함 대 주력인 71기둥 함대라는 것이 지금 동해안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함대가 언제까지 거기 에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닉슨 대통령 이 요전에 이번에 취한 이 조치를 중간 조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다음 단계의 어떠한 조치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 조치는 북괴가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 냐에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동해안에 와 있는 7함대가 언제까지 머물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그 때 가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1969년의 연설을 보면 1. 북한의 지속적 도발; 2. 미국의 미온적 대응; 3. 베트남 전쟁의 불확실성; 4. 오키나와 기지 반환; 5. 미국의 무상원조 중단 예측; 6. 북한의 전면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 등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었음. 이 가운데 자주 국방 패러다임이 등 장하는 것으로 생각됨.
- = 197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 연설

정부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임전 태세를 완벽히 하는 동시에, 자주 우방과의 군사적 유대를 공고히 하고,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강화하여 공산 침략을 단호히 분쇄하고, 승공 통일의 기반 조성을 확고히 하는 데 국방 시책의 중점을 둘것입니다.

- 본격적인 자주 국방 논의의 전개
- = 197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1971. 9.2.

70년대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미, 소 공존 체제를 중심으로 『유럽』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안정을 지속해 갈 것이 예상되나,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70년대의 상반기에 위험한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소련의 중동 분쟁에의 적극적 개입이 세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시현하여, 미, 소 공존 체제에 위협을 조성하게 되고, 이와 같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시도되고 있으며, 『아시아』에 있어서는 월남 전쟁의 장기화, 『캄보디아』의 새로운 사태, 발전, 그리고 호전적인 중공과 북괴의 재접근화 경향 등이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과 결부되어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한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안전 보장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은 물론, 한 미 양국의 이익과 『아시아』 및 자유 진영의 안전 보장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장이 없는 감축에 대하여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우리는 1970년대에 기필코 달성하여야 할 자주 국방 체제 확립을 위하여, 남에게 의존했던 국방 개념으로부터 집단 안전 보장 체제의 뒷받침을 받아, 우리의 국토는, 우리스로가 수호한다는 자세로 전환할 것이며,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70년대중반기 이후는 우리의 국력 신장에 따라 자주 국방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972년 연두 기자회견. 1. 11.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괴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능가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만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군사면에 있어서는 북괴가 우리보다도 앞서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 하는 점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북한 괴뢰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북 통일에 대한 기본 전략이 어디까지나 무력적화 통일에 있는 것입니다. 무력에 의해서, 전쟁 수단에 의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괴뢰는 다른 일을 제쳐 놓고, 다른 모든 분야에 희생

을 무릅쓰면서까지 전쟁 준비에만 전력을 다 했읍니다...여기에 반해서 우리 대한 민국은 우리의 남북 통일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이 무력 통일이 아니고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5·16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또한 경제개발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한 개발에도 우리의 힘을 쏟아 왔던 것입니다...지금 이 시기에 와서 우리가 비상 사태 선언을 하고 또는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주한 미군의 일부 감축으로 155마일에 이르는 전 휴전선 방위를 우리 국군이 전담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우리의 방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만한 부담을 더 맡을 수 있는 그린 능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주국방 태세가 그만큼 강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가 앞으로 서로 의논해서 한반도에선 전쟁이 못나도록 중공하고 소련은 북괴를 감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은 대한 민국에 대해 전쟁을 도발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견제를 한다고 하면, 첫째, 여기에 뒤따라야 할 문제는 공산측에서 한국에 있는 유우엔군과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라, 4대국이 다 같이 보장하는데 미군이나 유우엔군이 남아 있을 필요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한미 방위 조약도 필요없으니 폐기하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북괴도 중공 및 소련과 맺고 있는 군사 동맹을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엔힘의 공백 상태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북괴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겠느냐, 충실히 지키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사태가 되는 것을 지금 북한 괴뢰의 김 일성이가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오면 무슨 구실을 붙여서든지 김 일성이가 쳐 내려오겠다, 이것 아닙니까, 적이 노리고 잇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4대국 보장이 아니라 5대국 보장이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는 주로 미국에 의지해서 우리 나라의 국방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전적으로 미국에 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정부는 그 동안 자주 국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한, 미 방위 조약 또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집단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1차적으로 끄겠다는 자제가 완전히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실효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집단 안보 체제라든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 미 방위 조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남한테에만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자주 국방에 대한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대 초 국제정세 인식, 데땅트 관, 향후 닥칠 데땅트 시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대책, 자주 국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회견문임. 박대통령은 이미 1971년 12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음. 자주의 개념은 대미, 대북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립경제를 바탕으로 자주국방을 해야만 한국의 국가전략이 완성된다는 밑그림이 있었음.
- = 1977년 연두 기자회견

80년대의 우리 나라는 자립 경제가 달성된다. 또 우리의 공업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산업 국가형으로 점차 바뀌어 갈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진 공업 국가형으로 점차 바뀌어 갈 것이다. 또. 우리의 국방은 자주 국방 태세를 거의 완비하게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은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농촌이 더 풍요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 때쯤 가면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무력으로 대한 민국을 침략하겠다는 망상을 재고해 보아야 될 그러한 단계가 오지 않겠는가...소위 8.18 만행 사건은 그들이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노려서 사전에 계획한 악질적인 만행이었다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왜 이러한 8.18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느냐 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즉 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 것이 아니냐, 미군이 빨리 철수를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한 미군 철수 여론을 조성하려고 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우리가 전에 제의한 바 있는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안』을 받아들이라, 이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된 연후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남북 불가침 협정 제의는 74년 1월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연두 기자 회견에서 내가 제의했습니다.

- 한반도 미니데땅트의 붕괴, 도끼만행사건, 석유파동 등을 겪고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시기임. 이 시기에 오면 자주 국방은 소극적, 방어적 개념으로부터 북한에 대해 좀 더 공세적인 개념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평화, 통일 제안을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여겨지는 개념의 변화를 보임.

IV. 북한의 자주 개념

- o 북한의 자주 개념은 주체사상과 분리불가능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1955년 경 최초로 정립 된 주체사상은 북한 나름의 역사적, 사회적, 국제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출현한 것이므로 주체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자주의 개념 역시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함.
- 195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 스탈린의 격하 운동, 김일성의 국내 정권 공고화 필요 및 북한 내 소련파의 도전에 대한 방어 필요성, 중소 분쟁이 격화되면서 사회주의 강대국의 대국주의 및 진영논리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모색할 필요성 등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와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진행됨.
- 더불어 1961년 한국에서 강력한 반공을 내세운 박정희 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4대 군사노선 (1962) 및 3대 혁명역량 강화(1964) 등 힘의 강화에 노력.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 하에 자주 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짐.
- o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 철학으로 자주성과 창조성을 고양시킨다는 목적 하에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군사에서의 자위를 내세움.
- 그러나 이 모두를 관통하는 주체와 자주의 개념은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가짐. 즉, 자주의 주체인 인간은 근로인민계층의 집단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비판하는 내용. 정치에서 의 자주는 중소 등 강대국의 내정 불간섭을 중시, 외교노선에서의 자주는 중소 양대국 간에서의 균형외교와 블록불가담운동 및 북한 중심의 3세계 외교 등을 나타남. 또한 북한의 자주성을 위해 미국 등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배격을 담고 있음.

- 1970년대부터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담당함에 따라 내용이 체계화됨.
- o 북한 경제의 문제 심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열위 본격화 등의 상황에서 자주의 개념은 적극적, 공세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소극적, 공세적 개념으로 변화되는 분위기.
- 중소 등 사회주의 대국으로부터의 자주,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주, 그리고 한 국과의 대결에서의 자주 등 소극적 의미의 자주로 점차 변화.
- 북한에서 자주권은 평등권이라는 개념과 인접하여 사용되는 특이성. 사실상의 불평등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
- =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체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우리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와 그 전통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여야만 그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줄 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고무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80년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 상, 혁명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공식이 데올로기로 규정

= 1962년 12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정잭을 수립함과 동시에 북한의 방위체제를 전면 재검토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수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u>자주독립국가</u>라 할 수 없습 니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입니다 .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고수하고 혁명위엽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은 제국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서 맞서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언제너 준비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u>국방에서의 지위는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의 군사적 담보</u>입니다. 국방에서 자위의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통일원 1987, 112).

= 1965년 4월 김일성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

'사상에서의 주체', '<u>정치에서의 자주</u>',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의 4대 자주노 선으로 최초로 정식화되었으며, 1966년 8월 '로동신문'에 실린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사설 에서 조선노동당의 독자적인 이론으로 확립되었음이 천명됨.

= 1966년 8월 자주노선을 선언, 동년 10월 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공식화.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된다. <u>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u>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 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의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세계에는 큰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그 누구도 남의 자주 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u>자주권</u>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자주 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이다. 자기나라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주성을 떠 난 국제주의란 았을수 없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437)

= 1972년부터 철학적원리가 언급되기 시작. 9월 17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김일성의 답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야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자주정치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u>자주권</u>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정치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 관계 속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만큼 매개 나라가 국제사회의 성원 국으로서 세계 정치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당당한 권한을 가지고 응당한 역할을 하자면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u>자주권</u>을 행사해야 한다. 자주정치는 나라들 사이의 특권을 반대하고 령토안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치이다. 이처럼 자주정치는 자기 나라 혁명,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견결히 옹호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u>자주권</u>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정치인 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정치적으로 확고히 담보한다."(철학연구소, 2000: 34-36)
- = 1982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은) 맑스주의에 의해서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토대 위에서 세계에 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 사람은 <u>자주성</u>,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사회를 물질적 조건을 위주로하여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보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정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u>자주성</u>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고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 김정일이 1986년에 발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 인민대중 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